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63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 박형수 · 엄태영 · 구자근

유상범 • 조정훈 • 임종득

김기현 · 이종배 · 김소희

서일준 · 김석기 · 김성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이하 "정보통신공사등"이라한다)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의3(위반사실의 통보) 국가등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가 제63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제6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10의2.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영업정치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제66조의2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및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으로, "제66조제1항제4호"를 "제66조제1항제4호·제10호의 2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3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이하 "정보통신공사등"이
	라 한다) 수행과 관련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②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
	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
	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
	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
	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신 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
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제5호·제7호·제1
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 10. 삭 제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의3(위반사실의 통보) 국가등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가 제63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제6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11. ~ 1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 10의2.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 전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11. ~ 1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를 명하거나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 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2. 영업정치처분을 위반하거나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 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u>제66조제1항제4호</u>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 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를 요청한 경우
<u>④</u> 제1항 및 제3항
<u>.</u>
·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
도지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u>제66</u> 조제1항제4호 ·
<u>제10호의2 및 제3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u>.</u>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u> / 1 기 기 / 6 번 7 6 뒤 된 의 단기</u>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